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제선의원 대표발의)

외안 번호	522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09. 6. 19.

발 의 자 : 이제선 · 이용희 · 이명수
심대평 · 김성순 · 김성수
변용전 · 박성준 · 임영호
이상민 · 권선택 · 김용구
박대해 · 김낙성 · 정희수
류근찬 의원 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전본주택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지 않고, 복재합판 등 가연성 마감 재료가 장식물로 주로 사용되고 있음.

이는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고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철거가 쉬운 장점이 있으나, 화재발생시 짧은 시간 내에 진소될 뿐만 아니라 인근의 건물에 쉽게 불이 옮겨 붙는 등 매우 취약한 구조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음.

따라서,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본주택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는 동시에 내부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

사용하도록 하고(안 제50조, 제52조), 이를 위반한 때에는 벌칙을 주는 등 설효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재산과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함(안 제110조제10호 신설).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제1항 중 “공동주택 등”을 “공동주택, 건본주택 등”으로 한다.

제52조 중 “대통령령으로”를 “문화 및 집회시설, 의료시설, 공동주택, 건본주택 등 대통령령으로”로 한다.

제110조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0. 제50조를 위반한 설계자, 공사감리자, 공사시공자

부 칙

①(시행인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건본주택의 내화구조 및 내부 마감재료 사용에 관한 적용례) 제50조제1항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본주택의 축조를 위해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50조(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) ① 문화 및 집회시설, 의료시설, <u>공동주택</u>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 구조부들 내화(耐火)구조로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50조(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) ① ----- ----- <u>공동주택, 건물주택</u> 등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2조(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)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, 「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.</p>	<p>제52조(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) <u>문화 및 집회시설, 의료시설, 공동주택, 건물주택</u> 등 대통령령으로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11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</p>	<p>제110조(벌칙) ----- -----</p>

<p>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1.~9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10.·11. (생략)</p>	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~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제50조를 위반한 설계자, 공사감리자, 공사시공자</p> <p>11.·12. (현행 제10호 및 제11 호와 같음)</p>
---	---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(심재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24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09. 6. 29

발 의 자 : 심재철·유성업·안홍준
이두아·신영수·신상진
이정선·김소남·나성린
손숙미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 「건축법」에는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에 대하여 화재발생시 불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과 실내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만 있을 뿐 보행상 안전에 관한 근거 기준이 없음.

이로 인해 욕실, 화장실, 목욕장 등의 장소에서 노약자, 장애인 등 보행에 특히 주의를 요하는 자들이 미끄러운 바닥재질로 인해 사고를 당하는 예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에 있어서 욕실, 화장실, 목욕장 등 일정한 용도에 대하여는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의 일상 실내 보행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욕실, 화장실, 목욕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외 건축물
의 내부 마감재료는 보행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서 미끄러움을 방지할
수 있도록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함(안 제52조제2항
신설).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2조 제6항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욕실, 화장실, 목욕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로는 보행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서 비끄러움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외한 것이어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2조(建築物의 内部 마감재료) (제목 외의 부분 생략) <신 설>	제52조(建築物의 内部 마감재료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욕실, 화장실, 목욕장 등 대 동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 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보행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서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 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.